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호	29
-------------	----

제출일자 : 1995. 11.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5. 4. 1)에 따라 구 조례중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을 보완하고 조문구조 및 자구를 합리적으로 수정·정비하여 서울시 자치구 조례준칙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 삭제
(안 제9조제2항1호)
- 나.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삭제(안 제16조)
- 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양식 등 보완(안 제22조)
- 마.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별표4제 12호)
- 바. 기타 조문구조 및 자구수정(안 제2조 및 제5조 제2항 등)

3. 관련근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서울 특별시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

4. 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제2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①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를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서울특별시 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1호 해당지역"으로 하고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야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7조 중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제9조제1항 중 "제한지역,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를 "제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여야 한다"를 "재계약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재 투입된 종오니의 양"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이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적발 또는 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 ④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 취소후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확인 후 7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 ⑧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 별표 1 】 을 별지와 같이한다.

【 별표 4 】 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내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분뇨관련 업무 대행계약의 기준 (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술 능 력	자 본 금	사 무 실	차 량	차 고	신고용 전화	기 타
분뇨수집 운 반 업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법인 : 5천만원 개인 : 재 산 평가액 1 억원 이상	전용면적 15㎡이상	흡인식 차량 용량의 합계 3,600ℓ 이상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차고 (대당) (탈취시설 부착) - 5톤미만 : 13㎡ - 5톤 이상 10톤 미만 : 26㎡ - 10톤이상 : 36㎡	2대 이상	- 소득조 - 1조이상 - 종사원 - 목욕시설
정 화 조 청 소 업	가. 수질환경기사, 위생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이상 고등학교로서 이상자로서로 해 업종에 4년 이상 실무에 0종사현자 1인 이상 나. 정화조의 청소 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법인 : 5천만원 개인 : 재 산 평가액 1억원 이상	전용면적 15㎡이상	흡인식 차량 용량 의 합계 30,000ℓ 이상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차고 (대당) (탈취시설 부착) - 5톤미만 : 13㎡ - 5톤 이상 10톤미만 : 26㎡ - 10톤이상 : 36㎡	2대 이상	- 소득조 - 1조이상 - 종사원 - 목욕시설

[템포 4]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8조 제1항및 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 B.O.D(mg/l)				
(1) 1일 처리용량 100m ³ 미만 : 100 초과	10	20	50	100
(2) 1일 처리용량 100~200m ³ 미만 : 80 초과	20	50	100	100
(3)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 60 초과	50	100	100	100
(4) 골프장 : 10 초과	50	100	100	100
단, '96.7.1일부터 아래의 2개 항목 기준 적용				
- B.O.D, S.S (mg/l)				
(1) 1일 처리용량 100m ³ 미만 : 80 초과	10	20	50	100
(2) 1일 처리용량 100~200m ³ 미만 : 60 초과	20	50	100	100
(3)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 40 초과	50	100	100	100
(4) 골프장 : 10 초과	50	100	100	100
나. 정화조 B.O.D 제거율(%)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 50% 미만	10	20	50	10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 50% 미만	20	5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2.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 BOD 1,500 mg/l 초과	20	50	100	100
단, 96.7.1일부터 2개항목기준적용 - BOD,SS 각 500 mg/l 초과	20	50	100	100
3.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오수정화시설의 미 신고자 (1)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20	40	60	100
나.정화조의 미 신고자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30	50
20	40	60	100	
4. 법 제11조, 제26조 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 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가. 오수정화시설의 사용 (1)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나. 정화조의 사용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5 10	10 20	20 30	30 50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사용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20 50 100	40 50 100	60 50 100	100 50 100
라.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사용	10	20	30	50
5.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자.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20	40	60	100
(2)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30	60	100	100
나.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10	20	30	5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20	40	60	100
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50	100	100	100
라.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50	70	80	100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100	100	100	100
6. 법 제14조 제2항, 제28조 제3항 또는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 정화시설 또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				
가. 기능의 정상적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10	20	30	50
(나)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20	40	60	100
(2) 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5	10	20	30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30	5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3)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0	40	60	10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100	100
(4)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10	20	30	50
나. 방류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1)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6월 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10	20	30	5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20	40	60	10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 (6월 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5	10	20	3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10	20	30	50
(3)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6월마다 1회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10	20	30	5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20	40	60	100
(4)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분기 1회이상)				
(가) 최근 1년간 1 ~ 3회 측정	20	40	60	10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30	5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다.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년 1회 이상)				
(가)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50	100	100	100
(나)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100	100	100	100
(2) 정 화 조 (년 1회 이상)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0	50	100	100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50	100	100	100
(3) 축산폐수 정화시설 (년 1회 이상)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50	100	100	10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100	100	100	100
(4)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되도록 수시 내부청소)	20	40	60	100
라. 1일 처리용량 100 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 대상인원 500인 이상 정화조의 배출 방류수를 소독하 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마. 악취 발생 또는 해충 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10	20	30	50
(나)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20	40	6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2) 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5 10	10 20	20 30	30 50
(3)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20 30	40 50	60 100	100 100
(4)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10	20	30	50
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100	100
7.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00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	30	40	100
9. 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50 70	70 10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10.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 분뇨 수집·운반 업자 (2) 정화조 청소 업자	30 50	60 100	100 100	100 100
11. 법 제35조 제6항 및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징수한 자	20	50	100	100
12.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3.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4.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5. 법 제43조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1) 기술 관리인 (2) 분뇨처리 담당자 등	20 50	40 70	60 100	100 100
16. 법 제44조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10	30	5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17. 법 제45조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8.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0	50	100	100
19. 법 제 2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 기준은 위반사례 이전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분뇨 자가 수집 운반업 (변경) 신고서
신고
폐업

신 고 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영업의 소재지			
영업의 종류	분뇨 자가수집, 운반업		
사무실 면적		전화번호	

오수·분뇨 및 측진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 수집 운반업을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서초구청장 귀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장비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분뇨자가 수집, 운반업 신고필증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변경 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서울특별시 ~~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 초 구 청 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수 수 납 부 (체 납)

① 입 법 번호	② 통 지 번호	③ 과 태 료 분 류 지 점	④ 납 부 기 관	⑤ 납 부 금	⑥ 납 부 액	⑦	납 부 의 무 자			⑪ 과 태 료 납 부 입	⑫ 이 의 체 기 일	⑬ 법 원 통 보 일
							⑧ 성 명	⑨ 주 소	⑩ 기 계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④ 부과기간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처분내역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
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३०

신청인 : (인)

서 헌 구 청 장 귀 하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수 신 :

발신 : 서초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소			
과 태 료 처분 내 역	④ 고지 일자		⑤ 과태료 액	
	⑥ 부과 기간		⑦ 이의제기 일	

-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 사본 1부.
 2.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끝.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별지 제8호 서식]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p> <p>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p> <p>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p> <p>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 및 기본계획)</p> <p>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p> <p>.....</p> <p>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p> <p>① 구청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p> <p>① 구청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p>
<p>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p> <p>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p> <p>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p>
<p>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p> <p>① 청장은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교통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정화 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p> <p>① 서울특별시 경찰청 도로 교통고시 제1호 해당지역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u>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제7조(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u>명시하여야 한다.</u>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 ① (생 략) ② (생 략) 1. <u>신고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u> 2. ~ 3. (생 략) ③ (생 략)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u>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제한지역,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u>제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u>
제10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 ② (생 략)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없는 경우에는 <u>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u> ④ ~ ⑤ (생 략)	제10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재계약할 수 있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p> <p>① (생 략)</p> <p>1. ~ 2. (생 략)</p> <p>3.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원 오너의 양 <u>(오수 포함)과 재투입된 종오너의 양에</u> 따라 부과한다.</p>	<p>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청소원 오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p>
<p>제15조(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p> <p><u>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u> <u>토지·건물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u> <u>한 자는 승계 이전에 발생한 수수료의</u> <u>납부의무를 승계한다.</u></p>	<p>제15조 (삭 제)</p>
<p>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p> <p>① (생 략)</p> <p>② <u>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u> <u>의하여 허가기한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u> <u>및 법 제37조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u> <u>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u> 한다.</p> <p>③ (생 략)</p>	<p>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 인정될 때에는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중변소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 (삭 제)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납부기관 및 수납 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u>③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u></p>	<p><u>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 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u></p>
<p><u>④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 특별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u></p>	<p><u>④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u></p>
	<p><u>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u></p>
	<p><u>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 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 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 장을 체납확인 후 7일 이내에 발부 하여야 한다.</p>
	<p>⑧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 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p>